

대학입학전형회피·배제운영규정

제정 2021.04.05

1차 개정 2026.08.2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 라 한다) 대학입학전형을 진행함에 있어 지원자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피·배제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8.24.>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“회피”란 대학이 타기관 또는 대학의 입학 관련 업무와 어떤 특수한 관계, 이해관계가 있어 불공정한 운영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배제시키는 일을 말한다.
- ② “배제”란 대학의 입학 관련 업무를 불공정하게 운영 또는 취급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제외시키는 일을 말한다. <개정 2026.8.24.>
- ③ “특수한 관계”란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2 제3항, 제4항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의2에서 정하는 수험생과의 관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의 모든 입학전형에 적용한다.

제4조(적용시기) ① 회피는 입학전형이 실시되기 전, 원서접수 완료 후 평가 전, 평가 진행 중에 안내하여 신고하도록 한다.

- ② 배제는 지원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 및 서류 검증을 진행해야 하므로 원서접수 완료 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8.24.>
- ③ 재검증은 해당 입학전형 합격자 발표 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사후검증은 해당 학년도의 모든 입학전형 종료 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적용대상) ① “회피”를 위한 자진신고 대상은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형제자매, 자녀 등 4촌 이내 친족을 포함한 지원자 중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인을 대상으로 한다.

- ② “배제” 대상은 연말정산자료, 인사현황자료, 가족장학사항 등 대학 자체 시스템 및 서류검토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으로 한다. <개정 2026.8.24.>

제6조(적용방법) ① 입학처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실시 전 회피·배제에 대한 시기·절차·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8.24.>

- ② 회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

1. 입학처는 회피대상자가 회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자 확정 이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도록 한다.
2. 회피 사유가 있는 교직원은 입학전형 전에 [별지 제2호 서식]의 “대학입학전형 회피 자진 신고서”를 작성하여 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 <개정 2026.8.24.>

1. 평가대상자 확정 이후 시스템 검증(연말정산자료, 인사현황자료, 가족장학사항 등)

을 통해 배제 대상자를 확인한다. <개정 2026.8.24.>

2. 입학처는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제1항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라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④ 전 교직원은 입학전형 실시 전에 입학관련 업무 참여와 관계없이 [별지 제1호 서식] “대학 입학전형 업무 수행 서약서”를 작성하여 입학처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대상자 처리) ① 입학처장은 회피·배제 대상 사안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를 입학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8.24.>

② 입학처장은 회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전형에 참여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입학관련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.

제8조(위반자 조치) ① 입학처장은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합격에 부정하게 기여하거나 또는 회피·배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평가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8.24.>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본 대학교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

제9조(사후 관리) ① 입학처는 입학관련 업무 참여 제한 대상자가 해당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입학전형 종료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입학처는 해당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본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험생의 합격에 부정행위 등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밝혀진 경우

2.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수험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는 등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

③ 입학처는 제2항의 결과가 해당 수험생의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 고지하고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10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학공정관리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대학 입학전형 업무 수행 서약서

본인은 우송정보대학 ○○○○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1.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
2.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·향응·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·알선 행위 금지
3. 본인 및 배우자, 형제자매, 자녀, 친족을 포함한 지인 등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대학 입학전형에 지원시 자진신고(회피)

년 월 일

소 속 :

직위/직급 :

성 명 : _____(서명)

대학입학전형 회피 자진 신고서

☐ 신고자 인적사항

성명		소속부서	
직위/직급		연락처	

☐ 지원자 인적사항

성명		출신고교	
수험번호		교직원과의 관계	
지원학과			
모집시기	☐ 수시 1차 ☐ 수시 2차 ☐ 정시 ☐ 편입학 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		
전형유형	☐ 일반전형 ☐ 정원내 특별전형 (☐ 실기 ☐ 면접) ☐ 정원외 특별전형 (☐ 실기 ☐ 면접)		

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	개인정보 제공 항목	동의
대학입학전형 회피 여부확인	신고자 인적사항(성명, 소속부서, 직위/직급, 연락처), 지원자 인적사항(성명, 출신고교, 수험번호, 교직원과의 관계) 및 지 원학과, 모집시기, 전형유형 * 보유기간 1년	☐

*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. 단, 동의하지 않을 입학전형 업무에 제한
받을 수 있음.

위와 같이 회피 자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 고 인: _____(서명)

우송정보대학 총장 귀하